

시즌2
제1차

| 국어는 이감 |

이감 국어 모의고사

예비평가 지문 분석

[2021학년도 시즌2 제1차 예비평가 지문 분석]

[16~19] 현대소설 : 김유정, 「만무방」

* 수록 지문 평가

김유정의 소설을 설명할 때 ‘아이러니한 상황’, ‘해학성’, ‘사회 고발’이라는 말이 꼭 나오는 이유를 잘 알 수 있는 작품이다. 이에 주목하면서 읽자. 또한 김유정은 소설 속에서 강원도 지방의 토속적인 사투리, 개인적으로 만들어 낸 말 등을 많이 섞어 쓰는 소설 언어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소설 제목 ‘만무방’은 염치가 없이 막된 사람을 뜻한다.

* 수록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응오는 성실한 농군임에도, 소작료를 내고 나면 빚만 남으리란 생각에 아내의 병을 구실 삼아 벼를 수확하지 않는다.[→ 응오의 상황이다. 작년 추수 때에 소작료를 내고 빚을 갚고 나자 자신은 곡식 한 톨 못 건진 빈손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흉년이 들어 그나마 소작료도 다 못 낼 판이다. 지주에게 하소연을 해 보았으나 지주는 ‘소작인들 벼를 이 나빠진다’고 막무가내이다. 추수를 하는 그날로 파산해서 소작이고 뭐고 다 내쫓길 판이라 벼를 수확하지 않는 게다.] 응오의 논에서 벼가 도둑맞자 형 응철[→ 같은 소작농이었으나 이미 예전에 파산해서 가족은 전부 흩어지고 자기 혼자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며 사는 사람이다. 궁하면 도둑질도 마다하지 않아서 이미 전과가 4범. 어쩌다 동생이 그리워서 잠시 이 동네에 들렀는데 하필이면 그때부터 벼가 없어져서 동네 사람들에게 범인 1순위로 의심을 받게 생겼다.]은 이웃 성팔을 의심하여[→ 성팔이 또한 절도 전과가 있는 인물이다.] 그를 추궁하다가, 벼가 사라진 사실이 알려지면 오히려 절도 전과가 있는 자신이 의심받을까 염려한 나머지 이 사실을 소문내지 말 것을 성팔에게 요구한다.

토막1 : 도둑을 잡기로 결심한 응철

성팔이는 한 굽 접히어[→ ‘굽’은 신발 바닥 등을 꺾는 물건이니 이것이 접히면 높이가 낮아지게 된다. 그러니 ‘한 굽 접히어’는 입장이나 위세가 낮아졌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성팔이는 응철이의 추궁에 항변하면서도 내심 당황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응철이에게서 소문을 내지 말라는 당부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인다.] 말문이 메었는지 얼떨하여 입맛만 다신다.

“아예 말은 내지 말게. 응, 알지?”

하고 다시 다질 때에야 겨우 주저주저 입을 열어,

“내야 무슨 말을 내겠나.”

하고 조금 사이를 떼어 또,

“내야 무슨 말을……. 그건 염려 말게.”

하더니 비실비실 몸을 돌리어 저 갈 길을 내건는다. 그러나 저 앞고개까지 가는 동안에 두 번이나 돌아다보며 이쪽을 살피고 살피고 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 뭔가 개운치 않고 머릿속이 복잡한 것일 게다. 자기를 의심해서 추궁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또 소문을 내지 말라니……. ‘생각해 보면 내가 절도 전과 때문에 내심 켜기는 것처럼, 응철이 또한 마찬가지겠지……. 하지만 응철이는 응오의 형 아닌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수 있겠다.

응철이는 그 꼴을 이윽히 바라보고 입안으로 죽일 놈, 하였다. 아무리 도적이더라도 같은 동료에게 제 죄를 넘겨줘우려 함은 도저히 의리가 아니다.[→ 응철이는 성팔이의 짓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다. 성팔이가 자기 도둑질을 응철이에게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거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응오가 더 딱하지 않은가. 기껏 힘들여 지어 놓

았다 남 좋은 일 한 것을 안다면 눈이 뒤집힐 일이겠다.

이래서야 어디 이웃을 믿어 보겠는가.

확실히[→ 확실히] 증거만 있어 이놈을 잡으면 대변에 요절을 내리라 결심하고 응철이는 침을 탁 뱉어 던지고 산을 내려온다.

그런데 그놈의 행티[→ 심술을 부려 남을 해롭게 하는 버릇]로 가늠 보면[→ 헤아려 보면] 응철이 저만치는[→ 자기만큼은] (초보의) 때가 못 벗은 도적이다. 어느 미친놈이 논두렁에까지 가새[→ 가위의 사투리]를 들고 오는가. 격식도 모르는 풋둥이[→ 애송이의 비표준어]가 그러려면 바로 조 남가리(= 남알이 붙은 곡식을 그대로 쌓은 더미)나 수수 남가리 말이지 그 속에 들어앉아 가위로 속닥거려야 들킬 리도 없고 일도 편하고 두 포대고 세 포대고 마음껏 딸 수도 있다. 그러다 틈 보고 집으로 나르면 그만이지만 누가 논의 벼를 다…….

⇒ 응철이는 도둑의 솜씨가 영 시원찮다고 어이없어하는 중이다. 조나 수수는 줄기도 길고 무성해서 그 남가리 속에 숨어 가위로 이삭만 따 내기 적당하지만, 벼는 키가 작아서 몸을 숨기기 어려우니 논에서 가위로 이삭을 잘라 훔쳐 가는 게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게, 경력 있는 도둑인 응철이의 생각이다.

그렇게도 벼에 걸신이 들었다면 바로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 한 달포(=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주인 앞에 얼렁거리며 신용을 얻어 오다가 주는 옷이나 얻어 입고 다들 잠들거든 벼섬이나 두둑이 짊어 메고 달렁거리면[→ 도망가면] 그뿐이다. 이건 맥도 모르는 게 남도 못살게 굴려고 에 — 이 망할 자식두…….

⇒ 정 벼가 필요하면 그렇게 쉽게 도둑질을 할 수 있는데 이 도둑은 영 초보라서 괜히 자기가 의심받게 생겼다고, 한심하게 여기며 화를 내고 있다. 이 도둑이 초짜라는 응철이의 생각은, 나중에 밝혀지는 도둑 정체의 의외성과 호응하는 이야기 요소이다.

[중략 부분 줄거리] 그날 밤, 응오의 논 근처 산자락에서 범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응철은 논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가 나올 때 덮칠 작정으로 몰래 다가간다.

토막2 : 자기 논의 벼를 훔친 응오

한 식경(= 밥을 먹을 동안이라는 뜻으로, 잠깐 동안을 이르는 말)쯤 지났을까,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논둑에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야 기어 나온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뭇지형겅이 가리었다. 붓짐을 등에 짊어 메고는 허리를 구뭇이(= 약간 굽은 듯한 상태로) 뺄손[→ ‘뺄소니’의 개인적으로 변형된 말]을 놓는다.

그러자 응철이가 날째게 달려들며,

“이 자식, 남의 벼를 훔쳐 가니!”

하고 대포처럼 고향을 지르니 논둑으로 고대로 데굴데굴 굴러서 떨어진다. 얼굴에 호되게 놀란 모양이다.

응철이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띠를 내려조졌다.[→ ‘뺄다 두들기거나 때리다’의 뜻이다.] 어이쿠쿠, 쿠 — 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뛰어서[→ 비명 소리에 귀가 번쩍 뛰었다는 건, 응철이가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게 또 응철이에게는 너무도 의외의 인물이었다는 걸 나타내겠다.] 그 고개를 들고 팔부터 벗겨 보았다.[→ 목소리로 생각한 그 인물이 정말 맞는지, 얼굴을 확인하려고 고개를 들게 하고 팔을 치웠다는 게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가 없었음인지 시선을 치견으며 그 자리에 우두망창(= 정신이 얼떨떨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양)한다.

⇒ 응철이는 도둑이 누구인지 확인했다. 과연 목소리를 듣고 생각한 것과 같은 인물인 건데, 응철이는 확인을 하고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인지 시선을 도둑의 얼굴에 그대로 두지 못하고 돌린다. 아니, 그런데 왜 누구인지 얘기를 안 해? 응철이가 놀라는 장면을 보여 주면서 왜 서술자는 도둑의 정체를 말해 주지 않는 거냐고?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었다.[→ 뭐라고 말을 할지,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침묵이었다.] 살똥맛은 바람만 공중에서 북새를 논다.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님[→ 형님의 사투리]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유?”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뻗 돌린다. 그리고 느끼며 울음이 복받친다. 붓짐도 내버린 채,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 ‘성님’이라는 호칭에서, 그리고 ‘내 것’이라는 표현에서 이 도둑이 응오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 수 있겠다.

하고 테통스리이(= 말과 행동이 거칠고 미련한 데가 있게) 내뺨고는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없어진다.

형은 너무 꿈속 같아서 멍하니 섰을 뿐이다.

그러다 얼마 지나서 한 손으로 그 붓짐을 들어 본다. 가뿐하니 깍말가웃(= 한 말 반쯤의 분량)이나 될는지. 이까짓 걸 요렇게까지 해가려는 그 심정은 실로 알 수 없다. 벼를 논에다 도로 털어 버렸다. 그리고 아내의 치마어쨌지, 검은 보자기를 척척 개서 들었다. [→ 응오가 벼를 담는 데 쓴 보자기를 말한다. 보자기 하나 없는 가난한 살림이라 아내의 검정 치마에다 훑친 벼를 담기로 했나 보다.] 내 걸 내가 먹는다— 그야 이를 말이라. 하나 내 걸 내가 훑쳐야 할 그 운명도 알궂거니와 형을 배반하고 이 짓을 벌인 아우도 아우렷다.[→ ‘내 것 내가 먹는데’라는 응오의 말은 맞는 말인가? 아니다. 소작 제도에 따르면, 소작인은 추수를 해서 소작료를 내고 그 나머지를 가지게 된다. 소작료를 내기 전까지 그 농작물은 소작인의 것이 아니라 지주의 것이다. 그러니 이건 도둑질이고, 그런 사실은 응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밤에 몰래 논에 온 게지. ‘내 걸 내가 훑쳐야 할 그 운명’이라는 어구는 자기가 농사지는 벼를 밤에 몰래 훑치러 와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런 ‘운명’을 만든 **사회 모순을 짧고 강렬하게 고발**하고 있다.] 에—이 고얀 놈, 할 제 불을 적시는 것은 눈물이다.[→ 형이 의심받을 걸 뻔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도둑질을 한 아우가 껄뻘하기도 하다가, 그래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앞섰음이라.] 그는 주먹으로 눈물을 쓱, 비비고 머리에 번쩍 떠오르는 것이 있으니 두레두레한 황소의 눈갈. 시오 리를 남쪽 산으로 들어가면 어느 집 바깥뜰에 밤마다 늘 매여 있는 투실투실한 그 황소. 아무렇게 따지든 칠십 원은 갈데없으리라.[→ 황소를 훑쳐다 팔면, 칠십 원은 틀림없이 받을 수 있으니 아내의 약값이 필요한 동생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다.] 그는 부리나케 아우의 뒤를 밟았다.

공동묘지까지 거반 왔을 때에야 가까스로 만났다. 아우의 등을 탁 치며,

“애, 좋은 수 있다. 네 원대로 돈을 해 줄게 나하구 잠깐 다녀오자.”

썩썩한 어조로 기쁘도록 달랬다.[→ 같이 소도둑질을 하자는 얘기다. 동생이 그러자고 그러면 또 하나의 만무방이 탄생하는 셈이다.] 그러나 아우는 입 하나 열려 하지 않고 그대로 실쭙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깨 위에 올려놓은 형의 손을 부질없단 듯이 몸으로 털어 버린다. 그리고 뻘뻘 달아난다.[→ 형 같은 인간이 되란 말인가, 하는 반발심이 나타난 것일 게다. 응철이의 평소 행태로 제안의 내용을 이미 짐작하고 있는 게다.] 이걸 보니 하 엄청나고 기가 확 막히었다.

“이눔아!”

하고 악에 받치어,

“명색이 성이라며?”

대뜸 몽둥이는 들어가 그 불기짜를 후려갈겼다. 아우는 모로 몸을 꺾더니 시나브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찌그러진다. 뒤미처 앞정강이를 때리고 등을 뺨다. 일어나지 못할 만치 매는 내리었다. 체면을 불고하고 땅에 엎드리어 엉엉 울도록 매는 내리었다.

찾김에 하긴 했으되 그 꼴을 보니 또한 마음이 편할 수 없다. 침을

뱉, 뺨어 던지곤 팔자 드신 놈이 그저 그렇지 별수 있나. 쓰러진 아우를 일으키어 등에 업고 일어섰다. 언제나 철이 날는지 딱한 일이었다. [→ 도둑질을 예사로 하는 응철이가 성실한 농군인 응오를 ‘언제나 철이 날는지 딱’하다고 여긴다. 이것 또한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속 썩는 한숨을 후— 하고 내뿜는다. 그리고 어청어청 고개를 묵묵히 내려온다.

* 참고 자료

일제 강점기 소작 제도의 흉악함

이 소설의 아이러니한 비극을 낳은 근본 원인은 소작 제도의 모순에 있다. 일제 강점기의 소작 제도는 실로 끔찍한 것이었다. 지주가 수탈해 가는 소작료는 소작인이 생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소출의 80퍼센트에 달하기도 했고, 그보다 좀 나은 곳도 어디나 50퍼센트를 넘었다. 거기다 농사짓는 데 필요한 일체의 도구나 비용도 소작인이 부담했으며, 도시 생활을 하는 지주들을 대신하여 농토를 관리하는 마름들도 중간에서 소작인을 수탈했다. 일제 강점기 소작농들은 갖은 굴욕을 감수하고 농지를 빌려서 온가족이 죽도록 고생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든지, 아니면 소작농이 되기를 포기하고 당장 굶어 죽든지 선택하는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살던 땅을 맨몸으로 떠나 간도로 이주한 조선인이 이백만 명에 이르게 된 것도 이런 모순 때문이었다. 이 소설의 ‘만무방’ 응철이도 원래는 성실한 농사꾼이었으나 소작 제도의 폐해 속에서 파산을 하고 가족이 흩어지는 바람에, 홀몸으로 떠돌며 절도나 강패 짓을 서슴지 않는 인물로 전락하게 되었다.

[20~24] 기술 : 최적 탐색 알고리즘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기술 - 컴퓨터 공학 - 알고리즘

최적 탐색 알고리즘, 해(解), 슬라이딩 퍼즐, 초기 모양, 목표 모양, 가능 모양, 적합 비용

* 지문 분석

문단1 : 최적 탐색 알고리즘

1) 특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해(解)** [→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값]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컴퓨터가 **최적인 해**나 **가장 효율적인 해**를 찾는 일련의 규칙으로 **‘최적 탐색 알고리즘’**이 있다.

⇒ ‘최적 탐색 알고리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핵심은 ‘최적인 해’나 ‘가장 효율적인 해’를 찾는 거다. 그렇다면 ‘최적인 해’나 ‘가장 효율적인 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

* 개념 확장

최적화 알고리즘의 종류

컴퓨터 공학에서 최적의 해를 찾는 문제를 ‘최적화 문제’라고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 알고리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선형 계획법** : 고려해야 할 요소들 [→ 주로 투입된 자원과 산출량] 사이에 일차 방정식이 성립할 경우, 즉 **선형(線型)**의 관계가 있을 때,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 한정된 물자를 투입하여 여러 개의 상품을 만들 때나 한정된 인적 자원을 여러 사업장에 배치할 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자원 분배 및 배치의 조합을 구하기 위해 사용된다.

- **동적 계획법** : 전체 문제를 부분 문제로 분할해서 풀고, 그 해결책을 다음 연산에서 재활용하는 알고리즘이다. 동적 계획법에서는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가능한 빨리 이동하는 경로를 찾고자 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감안하여 최적의 경로를 찾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가장 최적의 방법을 구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최적의 방법을 구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 **그리디 알고리즘** : 탐욕 알고리즘이라고도 한다. 최적 해를 구하는 데 추정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러 경우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할 때마다 **그 순간에 최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해** 나가는 것을 반복하여 최종적인 해답에 도달한다. 이 알고리즘의 장점은 가능한 경우의 수 전부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원하는 해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단점은 **최종적인 해답이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 **A* 알고리즘** : 에이 스타 알고리즘이라고 읽는다. 그리디 알고리즘의 일종으로 경로 탐색에 특화된 알고리즘이다. 전체 비용을 2개의 함수, G(x)와 H(x)를 더하여 구한다. G(x)는 초기 단계에서 현재 단계까지의 **정확한 경로 비용**이며, H(x)는 목표 도달 비용을 **추정한 값**이다. 추정치를 쓰는 이유는 **최적 해를 구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H(x)를 휴리스틱 함수라고 한다.

2) 이 알고리즘은 **가능한 여러 작업 순서** [→ ‘다수의 해’] 중에서 작업 시간이 가장 짧은 것을 찾거나 **여러 경로** [→ ‘다수의 해’] 중 거리가 가장 짧은 것을 찾을 때 널리 사용되며, [다수 존재하는] 퍼즐의 풀이 중에서 **최적인 것**을 찾을 때 사용되기도 한다.

⇒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에서 시간이나 거리 같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을 ‘최적인 해’, ‘가장 효율적인 해’라고 하나 보다. 모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빨리 가는 수단과 방법을 찾기 위해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는 거다.

* 개념 확장

알고리즘

수학에서 계산 절차를 의미하는 알고리즘은 대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9세기 페르시아 수학자인 ‘알콰리즈미(al-Khwarizmi)’에서 온 말이다. 대수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인 그의 책 『대수학』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그의 이름이 ‘알고리즘(algorismus)’로 표기되었다. 12세기에 영어로 다시 번역되면서 ‘알고리즘(algorithm)’이라 표기되었다. 참고로 그의 저서 『대수학(al-jabr wa al-muqabala)』에서 대수학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 ‘Algebra’가 나왔다고 한다.

오늘날 컴퓨터를 이용한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의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원하는 출력을 이끌어 내는 규칙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문단2 : 최적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한 슬라이딩 퍼즐 풀이

1) 최적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퍼즐로 **슬라이딩 퍼즐**이 있다.

⇒ 슬라이딩 퍼즐을 이용하여 최적 탐색 알고리즘을 설명하려나 보다. 아무래도 낯선 기술 분야를 다룬 내용이다 보니 친숙한 소재로 이해를 돕고 있다.

2) 이 퍼즐은 <그림>에서와 같이 칸이 배열되도록 한 후, 하나의 칸만 비워 두고 나머지 칸들에 각기 다른 문자가 적힌 정사각형 조각들을 뒤섞어 배치한 **‘초기 모양’**으로 주어진다. 퍼즐의 풀이는 빈칸에 **인접한 조각을 빈칸으로 이동**해 가며 **‘목표 모양’**을 달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초기 모양	목표 모양
2 8 3	1 2 3
1 6 4	8 4
7 5	7 6 5

<그림>

⇒ 주어진 ‘초기 모양’을 ‘목표 모양’으로 바꾸는 것이 퍼즐의 미션인 것이다.

3) 어떤 조각을 빈칸으로 이동하는 것은 빈칸이 그 조각이 있던 자리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데, 최적 탐색 알고리즘에서는 **빈칸이 이동한 경로로 풀이를 표현**한다.

⇒ 그렇겠다. 문자가 적힌 조각은 수가 많지만 빈칸은 딱 하나 있으므로 일일이 어느 문자 조각을 옮겼다고 표시하는 것보다 빈칸을 옮기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겠다.

문단3 : 각 단계별로 최적인 해를 구하는 최적 탐색 알고리즘

1) 슬라이딩 퍼즐의 가능한 풀이는 상당히 많다.

⇒ 가능한 풀이가 ‘상당히’ 많아야 컴퓨터 알고리즘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게다. 지문에서는 3×3 크기의 슬라이딩 퍼즐이 주어졌다. 이 경우에 조각을 뒤섞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8!이다. 퍼즐의 크기가 4×4라면 15!, 5×5의 크기라면 24!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를 통해 퍼즐의 크기는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서 가능한 풀이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2) 컴퓨터는 풀이들을 모두 찾은 후 **그중에서** [→ 슬라이딩 퍼즐을 푸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조각의 이동 횟수가 가장 적은 순서인 최적의 풀이를 골라낼 수 있으나, 이 방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 비효율적이다.].

⇒ 이 방법을 쓰면 먼저 가능한 경우의 수만큼의 풀이를 전부 찾은 다음에, 각각의 이동 횟수를 비교하여 이동 횟수가 가장 적은 순서의 풀이를 골라야 한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가장 비용이 적은 방법을 찾기 위한 비용이 커지는 것**이다.

3) 그래서 최적 탐색 알고리즘은 초기 모양에서 시작하여 매 순간 다음에 **어떤 조각을 이동시켜야** [→ 빈칸을 어느 방향으로 옮겨야] 효율적인지를 순차적으로 탐색해 나가는 방식으로 최적의 풀이를 찾는다.

⇒ 퍼즐을 다 풀기까지의 모든 단계를 전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 어떤 방법이 비용이 적게 드는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계산하는 것을 단계마다 반복한다는 것이다.

[Rew] 문단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최적 탐색 알고리즘’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해 [→ 최적인 해]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일 뿐만 아니라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 최적의] 방법으로 탐색하는 알고리즘이기도 한 것이다.

문단4 : 적합 비용을 통한 최적 경로 탐색

1) 최적 탐색 알고리즘은 주어진 모양에서 하나의 조각을 이동시켜 나타날 수 있는 ‘가능 모양’들마다 적합 비용을 계산하여, 그 값이 가장 작은 모양을 최적의 경로로 선택한다.

⇒ ‘초기 모양’과 ‘목표 모양’은 각각 1개겠지만 퍼즐을 푸는 과정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능 모양’은 여러 개일 것이다. 그 가능 모양들마다의 적합 비용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팩트 짚기] ‘적합 비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2) 적합 비용은 그 ‘가능 모양’을 택했을 때 초기 모양에서 목표 모양까지 소요될 예상 이동 횟수를 비용에 빚대어 추정한 값으로, G값과 H값의 합으로 계산된다.

⇒ ‘적합 비용’은 결국 예상 이동 횟수의 추정치라는 것인데, ‘G값과 H값의 합’이라 하니, G값과 H값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겠는데.....

3) G값은 초기 모양에서 ‘가능 모양’에 이르기까지의 조각 이동 횟수이며, ...

⇒ G값은 초기 모양에서는 0이고, 매 단계마다 1씩 증가할 게다. 결국 이 G값이 가장 작은 풀이 방법을 찾는 것이 알고리즘의 목적이 되겠다.

4) H값은 ‘가능 모양’에서 목표 모양과 문자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조각의 개수이다.

⇒ ‘가능 모양’을 ‘목표 모양’과 같게 만들어야 하므로 H값이 0이 되게 하는 것이 퍼즐 풀이의 목적이 되겠다.

5) H값은 ‘가능 모양’에서 목표 모양에 이르기까지 최소로 소요될 비용 [→ 이동 횟수]을 추정한 값인 것이다.

⇒ H값이 크면 클수록 ‘목표 모양’과 일치하지 않는 조각이 많다는 의미이므로 H값이 크면 목표 모양까지 남은 조각의 이동 횟수 역시 크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 원하는 해를 탐색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겠다.

[주목] 결국 슬라이딩 퍼즐의 최적 풀이란 가장 작은 G값으로 H값이 0이 되는 경로인 셈이다.

문단5 : 모양 정보의 형태와 생성

1) 이 알고리즘은 선택의 후보들인 ‘가능 모양’들마다 {빈칸의 이동 방향: G값, H값, 적합 비용}의 형태로 모양 정보를 생성한다.

⇒ 가능 모양들이 생성하는 모양 정보의 형태가 소개되고 있다.

2) 여기서 ‘빈칸의 이동 방향’은 상, 하, 좌, 우로 표기된다.

⇒ 빈칸의 이동 방향은 초기 모양에서 빈칸이 가운데 있다면 상, 하, 좌, 우 4가지 방향이 모두 가능하겠으나, 그다음 단계는 3개 이하만 가능하겠다.

3) 예를 들어 <그림>의 초기 모양에서 ‘조각 7’을 빈칸으로 이동하여 나타나는 ‘가능 모양’에 대한 모양 정보는 {좌: 1, 5, 6}이다.

[Rew] 문단2-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림>의 초기 모양에서 ‘조각 7’의 오른쪽에 있는 빈칸을 ‘조각 7’이 있던 왼쪽으로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빈칸의 이동 경로’는 ‘좌’가 된다. 초기 모양에서 빈칸이 처음 이동하였으므로 이동 횟수를 나타내는 G값은 1이 될 것이며 목표 그림과 일치하는 숫자 조각은 3, 4, 5이므로 나머지 조각 [→ 2, 8, 1, 6, 7]의 개수인 H값은 5가 된다. G값과 H값의 합인 적합 비용은 6이 되겠다.

[참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H값은 목표 모양과 일치하지 않는 문자 조각만의 개수이고, 빈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퍼즐 풀이를 빈칸의 이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문단2-3)에서 설명한 것처럼 표현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문자 퍼즐이다. 따라서 문자 조각을 어느 정도 움직여야 목표 모양과 같아지는지를 추정하기 위한 H값을 구할 때는 문자 조각만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그 외에 또 다른 ‘가능 모양’들에 의해 {상: 1, 3, 4}, {우: 1, 5, 6}의 모양 정보가 생성될 것이다.

⇒ <그림>의 초기 모양에서 빈칸은 맨 아래에 있었으므로 가능 모양은 3개가 있다. 초기 모양에서 빈칸을 한 번 이동한 단계의 가능 모양들이므로 G값은 모두 1일 수밖에 없다. 결국 H값을 구하여 H값이 가장 작은 것을 골라야 한다.

가능한 빈칸의 이동 방향	좌	상	우																											
가능 모양	<table><tr><td>2</td><td>8</td><td>3</td></tr><tr><td>1</td><td>6</td><td>4</td></tr><tr><td></td><td>7</td><td>5</td></tr></table>	2	8	3	1	6	4		7	5	<table><tr><td>2</td><td>8</td><td>3</td></tr><tr><td>1</td><td></td><td>4</td></tr><tr><td>7</td><td>6</td><td>5</td></tr></table>	2	8	3	1		4	7	6	5	<table><tr><td>2</td><td>8</td><td>3</td></tr><tr><td>1</td><td>6</td><td>4</td></tr><tr><td>7</td><td>5</td><td></td></tr></table>	2	8	3	1	6	4	7	5	
2	8	3																												
1	6	4																												
	7	5																												
2	8	3																												
1		4																												
7	6	5																												
2	8	3																												
1	6	4																												
7	5																													
G값	1	1	1																											
H값	5	3	5																											
적합 비용 (G값+H값)	6	4	6																											

* 음영 처리된 부분 : ‘목표 모양’과 일치하는 조각이다.

5) 최적 탐색 알고리즘은 이 모양 정보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적합 비용이 가장 작은 모양을 택한 후 해당 모양 정보를 ‘풀이 목록’에 저장한다.

⇒ 모양 정보 중 적합 비용이 가장 작은 것이 {상: 1, 3, 4}이므로, {상: 1, 3, 4}가 풀이 목록에 저장되고 나머지 2개는 저장되지 않고 버려진다. 이로써 빈칸이 ‘좌’로 갔을 경우와 ‘우’로 갔을 경우는 최적 경로가 아니므로 풀이 목록에 저장되지 않는다.

6) 그리고 그 모양 [→ 적합 비용이 가장 작은 모양]을 주어진 모양으로 삼아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

⇒ 모양 정보 {상: 1, 3, 4}의 가능 모양은 확정되어 저장되었으므로 다른 가능 모양 [→ {좌: 1, 5, 6}, {우: 1, 5, 6}]을 택했을 때의 경우의 수는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현재는 {상: 1, 3, 4}가 주어진 모양이므로 이 상태에서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가능 모양을 찾아서 각각의 적합 비용을 찾고 그중에서 적합 비용이 가장 작은 것을 찾아 저장하고, 또 저장된 가능 모양을 새롭게 주어진 모양으로 삼아서 다시 가능 모양을..... 반복하는 것이다.

7) 단, 되돌아가는 경로를 방지하기 위해, 주어진 모양에 이르기 직전의 모양에 대해서는 모양 정보를 생성하지 않는다.

⇒ 그렇겠다. 애써 한 칸 움직였다가 다시 돌아가면 이동 횟수 2번을 소용 없이 낭비하는 셈이니 가장 효율적인 경로에서 그만큼 멀어지는 거다. 그래서 직전 모양의 모양 정보는 아예 생성하지도 않음으로써 되돌아가는 경로를 원천 봉쇄한다.

[Rew] 2)에서 ‘빈칸의 이동 방향’은 상, 하, 좌, 우로 표기된다고 했으니 가능 모양 역시 빈칸의 이동 방향별로 4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가능 모양이 4개가 존재하는 것은 초기 모양에서만 가능하고 그다음 단계부터는 3개 이하만 가능하겠다. 물리적으로는 빈칸을 상, 하, 좌, 우 4가지 방향으로 옮길 수 있더라도 직전에 왔던 칸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가능한 빈칸의 이동 방향	좌	상	우																											
가능 모양	<table><tr><td>2</td><td>8</td><td>3</td></tr><tr><td></td><td>1</td><td>4</td></tr><tr><td>7</td><td>6</td><td>5</td></tr></table>	2	8	3		1	4	7	6	5	<table><tr><td>2</td><td></td><td>3</td></tr><tr><td>1</td><td>8</td><td>4</td></tr><tr><td>7</td><td>6</td><td>5</td></tr></table>	2		3	1	8	4	7	6	5	<table><tr><td>2</td><td>8</td><td>3</td></tr><tr><td>1</td><td>4</td><td></td></tr><tr><td>7</td><td>6</td><td>5</td></tr></table>	2	8	3	1	4		7	6	5
2	8	3																												
	1	4																												
7	6	5																												
2		3																												
1	8	4																												
7	6	5																												
2	8	3																												
1	4																													
7	6	5																												
G값	2	2	2																											
H값	3	3	4																											
적합 비용 (G값+H값)	5	5	6																											

문단6 : 동일한 적합 비용의 문제 해결

1) 그런데 ‘가능 모양’들 중 적합 비용이 가장 작은 것이 두 개 이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그렇다. {상: 1, 3, 4} 다음의 가능 모양 역시 3개가 되겠다. 이 때 {좌: 2, 3, 5}, {상: 2, 3, 5} 모두 적합 비용이 5로 같아서 하나를 골라 저장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럴 때는 어느 모양 정보를 골라 풀이 목록에 저장해야 한다는 말인가?

2) 그럴 때[→ 적합 비용이 가장 작은 것이 ‘두 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를 택하여 풀이 목록에 저장하는 과정을 일단 보류하고 적합 비용이 가장 작은 모양들 각각을 주어진 모양으로 간주하여 그다음 경로의 ‘가능 모양’에 대한 모양 정보들을 생성한다.

⇒ 그렇다면 우선 {좌: 2, 3, 5}를 주어진 모양으로 간주하고 가능 모양들의 모양 정보를 구하면……

가능한 빈칸의 이동 방향	상	하																		
가능 모양	<table><tr><td></td><td>8</td><td>3</td></tr><tr><td>2</td><td>1</td><td>4</td></tr><tr><td>7</td><td>6</td><td>5</td></tr></table>		8	3	2	1	4	7	6	5	<table><tr><td>2</td><td>8</td><td>3</td></tr><tr><td>7</td><td>1</td><td>4</td></tr><tr><td></td><td>6</td><td>5</td></tr></table>	2	8	3	7	1	4		6	5
	8	3																		
2	1	4																		
7	6	5																		
2	8	3																		
7	1	4																		
	6	5																		
G값	3	3																		
H값	3	4																		
적합 비용 (G값+H값)	6	7																		

[Rew] 여기에서 왜 빈칸의 이동 방향이 ‘우’인 가능 모양은 제시되지 않는지 궁금해하면 안 된다. 문단5-7)에서 말한 것처럼 빈칸이 직전에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원천 봉쇄된다.

⇒ 또 {상: 2, 3, 5}를 주어진 모양으로 간주하고 가능 모양들의 모양 정보를 구하면……

가능한 빈칸의 이동 방향	좌	우																		
가능 모양	<table><tr><td></td><td>2</td><td>3</td></tr><tr><td>1</td><td>8</td><td>4</td></tr><tr><td>7</td><td>6</td><td>5</td></tr></table>		2	3	1	8	4	7	6	5	<table><tr><td>2</td><td>3</td><td></td></tr><tr><td>1</td><td>8</td><td>4</td></tr><tr><td>7</td><td>6</td><td>5</td></tr></table>	2	3		1	8	4	7	6	5
	2	3																		
1	8	4																		
7	6	5																		
2	3																			
1	8	4																		
7	6	5																		
G값	3	3																		
H값	2	4																		
적합 비용 (G값+H값)	5	7																		

⇒ 여기에서도 빈칸의 이동 방향이 ‘하’인 가능 모양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좌: 2, 3, 5} ⇨ {상: 3, 3, 6} or {하: 3, 4, 7}
{상: 2, 3, 5} ⇨ {좌: 3, 2, 5} or {우: 3, 4, 7}

3) 그리고 각 경로에서 생성된 모양 정보들을 모두 비교 대상으로 취합하고 그들 중 적합 비용이 가장 작은 것을 택한 후, 그 ‘가능 모양’까지의 경로에 놓인 모양 정보를 순서대로 풀이 목록에 저장한다.

⇒ {좌: 2, 3, 5}와 {상: 2, 3, 5}에서 생성된 모양 정보들을 결국 모두 비교하면, 그중 적합 비용이 가장 작은 {좌: 3, 2, 5}가 선택되어, {상: 2, 3, 5}부터 {좌: 3, 2, 5}까지 모양 정보로 풀이 목록에 저장될 것이다.

⇒ 현 단계에 저장된 풀이 목록은 다음과 같다.

{상: 1, 3, 4}, {상: 2, 3, 5}, {좌: 3, 2, 5}
--

문단7 : 최적 탐색 알고리즘의 종료

1) 풀이 목록에 H값이 0인 정보[→ 목표 모양과 완전히 일치하는 모양 정보]가 추가될 때 최적 탐색 알고리즘은 종료된다.

⇒ H값이 0이 되었다는 것은 목표 모양과 일치하지 않는 조각이 없다는 것이므로 퍼즐의 풀이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풀이 목록에 추가된 순서대로 ‘빈칸의 이동 방향’들이 곧 최적의 풀이에 해당한다.

⇒ 그렇겠다. 지문의 초기 모양에서 목표 모양으로 가기 위한 최적의 풀이는 {상: 1, 3, 4}, {상: 2, 3, 5}, {좌: 3, 2, 5}, {하: 4, 1, 5}, {우: 5, 0, 5}가 되겠다. 최소 5번의 이동 횟수가 필요가 한 것이다.

3) 이 풀이에서 최소 이동 횟수는 풀이 목록에 마지막으로 추가된 모양 정보의 G값과 같다.

[Rew] 문단4-2), 3)에서 나온 것처럼 G값은 이동 횟수이므로 ‘H값이 0이 되었을 때의 G값’이 최적화된 이동 경로가 필요로 하는 이동 횟수, 즉 최소 이동 횟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적합 비용은 G값과 H값의 합이므로 H값이 0이 되는 마지막 모양 정보에서는 G값과 적합 비용이 같다는 것도 알 수 있다.

[28~31] 예술 : 미니멀리즘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예술 - 회화 - 미니멀리즘

회화적 재현, 원근법, 미니멀리즘, 초창기 미니멀리즘, 평면성, 추상 표현주의, 로스코, 스틸라, 후기 미니멀리즘, 사물 디자인

* 지문 분석

문단1 : 회화적 재현에 대한 문제의식

- 1) 전통적으로 회화의 목적은 대상의 본질을 탐구하여 이를 [→ 대상] 재현(= 다시 나타냄)하는 데에 있었고, 이를 위해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캔버스에 옮기는 회화적 재현의 과학적 방법으로 원근법이 발달하였다.

⇒ 미술에서 ‘재현’이란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을 닮게 그리는 것을 말한다. ‘재현’이 대상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모방함을 추구한다면, ‘표현’은 예술가가 자신의 정신세계에 담긴 어떤 것을 창의적으로 나타냄을 뜻한다. 전통적인 회화에서 화가는 재현하려는 대상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그리는 원근법을 발달시켰다는 거다. 많이 들어본 얘기다.

[참고] 회화에서 원근법은 3차원의 물체와 그것이 위치하는 공간과의 관계를 2차원 평면에 묘사하는 기법을 가리킨다. 물체들의 연장선을 그었을 때,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은 소실점이며 이는 공간에 입체감을 준다. 다음 그림은 원근법이 적용된 1점 투시도 [→ 소실점이 1개]다.



- 2) 그러나 아무리 정교하게 묘사해도 그림은 사진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캔버스에 구현(= 구체적으로 나타냄)된 것은 실제 대상의 본질이 아니라 그저 2차원 평면 [→ 캔버스]에 담긴 3차원 [→ 원근법으로 그린]의 허상인 환영(幻影)에 불과하다는 문제의식이 등장하였다.

⇒ 맞다. 제아무리 똑같이 그렸다고 한들 사진을 따라갈 순 없다. 제아무리 뛰어난 화가가 열심히 현빈을 그려 봤자 현빈을 직접한 사진만 하겠는가.

⇒ 게다가 재현된 대상은 그저 비슷해 보이는 대상일 뿐, 대상의 본질을 나타내지 못했다. ‘원근법’을 통해 아무리 3차원을 흉내 내어 봤자 그것은 2차원 평면에 구현된 환영에 불과했다는 말이다. 이게 문제라는 의식이 나타났는데.....

- 3) 이러한 [→ 캔버스에 구현된 것이 환영에 불과하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그려질 대상의 본질이 아니라 회화 그 자체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착목(= 착안)한 예술 사조로 미니멀리즘이 있다.

⇒ 그렇다. 미니멀리즘이 중심 화제다. 전통적 회화가 ‘대상의 본질’에 주목했다면, 미니멀리즘은 ‘회화 그 자체의 본질’에 주목했다는 점을 잘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문단2 : 초창기 미니멀리즘

- 1) 1960년대에 등장한 초창기 미니멀리즘은 조각과 같은 타 예술 장르와 구별되는 회화만의 본질을 매체 [→ 캔버스]의 평면성에서 찾았다. 조각 [→ 타 예술 장르]의 본질이 입체성에 있다면 회화는 물감으로 덮인 캔버스의 표면 [→ 평면성]에 고유성 [→ 회화 그 자체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다.

⇒ 미니멀리즘은 그럴 대상의 본질이 아니라 회화 그 자체의 본질을 고민했고, 다른 예술 장르에는 없는 회화만이 지닌 고유한 게 뭔지를 찾았다는 거다. 맞다. ‘평면성’이다.

[백략 짚기] ‘초창기’ 미니멀리즘이 나오는 걸 보니 초창기가 아닌 미니멀리즘도 있다 보다.

- 2) 화려한 장식이나 불필요하게 덧붙여진 요소들을 걷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책상이 더 책상다운 것처럼, 미니멀리즘은 평면 [→ 회화 자체의 본질]을 더 평면답게 하기 위해 불필요한 요소나 기교들 [→ 회화 자체의 본질이 아닌 요소]을 최소화하였다.

⇒ minimal,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하여 그렸다. 따라서 ‘평면성’을 방해하는 ‘요소나 기교들’은 최소화했다. 이러한 ‘요소나 기교들’이 구체적으로 무얼 가리키는지는 좀 더 읽어 봐야겠다.

- 3) 그 결과 [→ 불필요한 요소나 기교들을 최소화한 결과] 미니멀리즘 회화에는 단순함과 간결함이 주는 아름다움이 드러났다.

⇒ ‘평면성’이 미니멀리즘이 추구하는 바라면, ‘단순함과 간결함’은 이로 인한 미적 특징이 되겠다. 아직까진 어렵지 않다.

문단3 : 추상 표현주의와 구분되는 미니멀리즘

- 1) 대상의 재현 [→ 전통적 회화의 목적]이라는 임무에서 벗어나 작가의 정신이나 생각, 감정 등을 표현하고자 한 추상 표현주의도 회화의 평면성에 주목하고 선과 색면을 주된 표현 수단으로 삼은 바 있다.

[백략 짚기] 추상 표현주의가 등장했다. 조금 긴장해야겠다. 문단1, 2에서 읽은 ‘전통적 회화’, ‘초창기 미니멀리즘’ 각각의 특징들과 잘 구분하며 읽으면 좋겠다.

⇒ 추상 표현주의도 미니멀리즘처럼 ‘대상의 재현’에서 벗어나 ‘평면성’에 주목했다. 여기까지만 읽어 내면 안 된다. 미니멀리즘과 좀 다른 면이 있다. 맞다. 추상 표현주의의 목적은 평면성이 아니라 ‘작가의 정신이나 생각, 감정 등을 표현’하는 데에 있었던단다. ‘선과 색면’처럼 평면성은 표현 수단에 불과했다.

* 개념 확장

추상 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난 예술 사조로, 추상 표현주의는 칸딘스키의 초기 작품에 대해 사용했던 용어다. 추상 표현주의는 대상의 형상에 주목해 이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전통적 회화의 경향에서 벗어나 작가들의 무의식에 내재된 정신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격렬하게 붓을 휘두르거나 캔버스에 물감을 뿌리기도 하였으며 강렬하고 단순한 색채를 통해 그들이 추구한 이미지를 넓은 색면 위에 드러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폴록, 뉴만, 로스코, 스틸 등이 있다.

- 2) 예컨대 이 사조 [→ 추상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로스코의 「No. 61」은 세 가지 색면으로만 구성되었다. 그런데 미니멀리즘의 입장에서는 로스코의 작품조차 환영의 흔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차가운 색이 따뜻한 색보다 더 멀어 보여서 미세한 입체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주목] “환영이 갑자기 왜 나오지?” 하면 안 되겠다. 문단1-2)에 나왔던 그 ‘환영’이다.

⇒ 차가운 색이 따뜻한 색보다 더 멀어 보인다는 건 ‘원근법’의 효과다. 추상 표현주의 작품들이 대상의 재현에서 벗어나 선과 색면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니멀리즘 입장에서는 색으로 느껴지는 원근감 [→ 미세한 입체감]조차도 전통적 회화의 흔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3) 정신이나 생각, 감정 등을 표현하기 위해[→ 추상 표현주의의 목적] 평면성을 수단으로 삼은 추상 표현주의와 달리, 미니멀리즘은 그 어떤 의미조차 남지 않도록 평면성만을 철저하게 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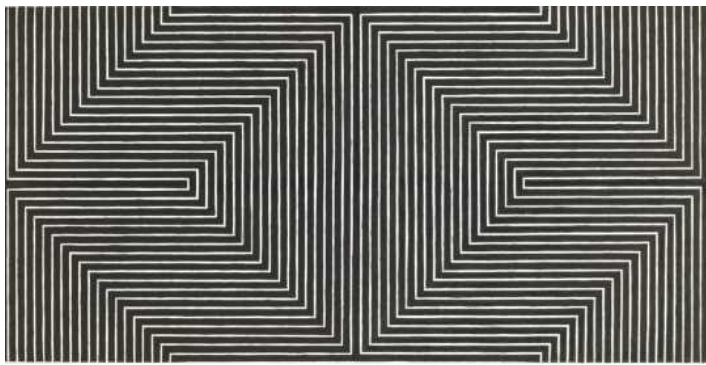
⇒ 추상 표현주의가 철두철미하지 못했던 것은 애초에 미니멀리즘과 목적이 달라서다. 미니멀리즘은 '평면성' 그 자체가 목적인 데 비해 추상 표현주의는 '작가의 정신이나 생각, 감정 표현'이 목적이고 '평면성'은 수단이였다.

⇒ 반면, 미니멀리즘은 평면성만을 철두철미하게 추구했다. 평면성이 아닌 것들은, 회화적 기교뿐만 아니라 작은 의미조차 남지 않도록 했다.

전통적 회화	초기 미니멀리즘	추상 표현주의
대상의 재현을 추구	전통적 재현에서 벗어나	
원근법 발달	회화 그 자체의 본질인 평면성 추구	작가의 정신세계 표현을 추구
	평면성 이외의 요소들은 배제함	평면성에 주목해 선과 색면을 표현

4) 실제로 미니멀리즘의 효시[→ 시작]가 된 스텔라의 「블랙 페인팅」 연작에서 작가는 표면[→ 평면성]만을 부각하기 위해 여러 색을 사용하지 않고 검정 페인트만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표면을 칠했다.

⇒ 스텔라는 미세한 입체감조차도 차단하기 위해 아예 전부 검정만 칠했다는 거다. 추상 표현주의의 로스코가 3가지 색을 썼기 때문에 입체감을 드러냈다고 생각한 거다. 평면성을 제외한 그 어떤 요소도 들어올 수 없도록 오로지 단 한 개의 색만, 그것도 검정만 썼단다. 의도는 좋지만 도대체 검정색 하나로만 그림을 어떻게 그리나? 다음 그림을 한번 유심히 감상해 보자.



<스텔라, 「블랙 페인팅」>

5) 검은 색면 사이의 좁은 간격은 캔버스의 흰 밑바탕이 그대로 드러나 흰 선처럼 보였는데, 이는 흰 선을 무늬로 직접 그린 결과물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검은 색면 사이로 보이는 흰 선이든 직접 그린 흰 선이든 이리나저리나 흰 선이지 않은가.

6) 수평선과 수직선을 직접 그리면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 평면성이 아닌 불필요한 요소나 기교]가 드러나게 마련인데, 그저 표면을 검게 칠하여 평면성만을 드러낸 후 남아 있는 흰 무늬는 상징의 역할마저 차단된 잔여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 아..... 그렇겠다. 5)에서 진술한 근본적 차이는 바로 '상징적인 의미'다. 결과적으로 같은 흰 선일지 몰라도 직접 흰 선을 그리면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게 된다. 이는 추상 표현주의가 추구했던 바다. 반면 검정 칠을 한 후 남은 흰 선은 그저 의미 없는 잔여물에 불과하다는 거다.

직접 그린 흰 선	검정 칠 후 남은 흰 선
상징적인 의미	상징성 차단
평면성 외의 요소	평면성만 부각

문단4 : 후기 미니멀리즘의 다양한 시도

1) 그런데 평면성을 추구하며 환영을 없애려는 경향은 점차 관심을 평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 '환영'은 원근감을 통해 대상을 재현한 전통적 회화의 한계였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미니멀리즘은 평면성을 추구했는데, 역설적으로 평면성의 추구가 평면성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뭔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이 역설적 상황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좀 더 읽어 보자.

2) 평면이 중요한 것이지 캔버스의 형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스텔라는 「자화상」 연작에서 단색으로 표면을 칠하되 오각형 등 다양한 형태의 캔버스를 활용하였다.

⇒ 아하, 그러니까 평면성이 중요한 것이지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서 캔버스의 형태를 다양하게 바꾸는 시도를 한 게다. 여전히 단색으로 칠해 평면성은 추구했단다.

3) 이렇게 직사각형 캔버스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벽에 걸린 작품을 대하기 시작하자, 회화 작품[→ 벽에 걸린 다양한 형태의 캔버스]은 예술 표현의 수단인 매체라기보다 그 자체가 벽에 걸려 있는 하나의 사물과 다르지 않아 보였다. 이제 그들에게 회화의 본질은 평면을 넘어 곧 사물이 된 것이다.

⇒ 아이러니다. 미니멀리즘이 추구한 것은 회화 그 자체의 본질인 평면성이었는데 이제 평면을 넘어 그림이 사물이 되어 버렸다. 오각형이든 타원이든 원뿔이든 캔버스가 다양한 형태로 벽에 걸리자 마치 시계처럼 사물과 다르지 않게 보이는 결과를 낳았다.

4) 후기 미니멀리즘에서 작품의 사물성에 주목하여 회화에서조차 평면성을 뛰어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진 이유이다. 평면을 넘어 사물이 되니 환영이 자리할 가능성은 아예 없었다.

⇒ 문단2에 진술된 '초기 미니멀리즘'과 대비되는 점이다. 초기 미니멀리즘은 '평면성'을 충실히 구현했는데, 후기 미니멀리즘은 '사물성'에 주목했다. 사물이 되어 버렸으니 대상을 3차원적으로 재현한 '환영'이니 뭐니 하는 것은 완전히 싹 사라졌다.

문단5 : 후기 미니멀리즘의 사물성

1) 후기 미니멀리즘에서 작품의 사물성에 주목한 결과, 회화 작품은 감상자와 분리된 채 해석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관조(= 예술적 아름다움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일)의 대상이 아니라 일상의 사물처럼 감상자와 같은 공간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공존하는 체험의 대상이 되었다.

⇒ 후기 미니멀리즘이 작품의 사물성에 주목한 의의다. 회화 작품이 그저 감상자가 관조해 주길 기다리는 수동적 존재였다면 사물화된 작품은 벽에 걸린 시계나 욕실에 걸린 수건처럼 감상자와 공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거다. 흥미로운 예술 사조다.

초기 미니멀리즘	후기 미니멀리즘
회화의 본질을 추구	전통적인 회화의 본질에서 벗어나
평면성에 주목	작품의 사물성에 주목
수동적 관조의 대상	적극적 체험의 대상

2) 미니멀리즘은 이와 같이 감상자에게 적극적 역할을 부여하는 다양한 예술적 시도로 이어졌으며, 기능을 최적화하면서 단조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물 디자인의 출현에도 영향을 미쳤다.

⇒ 작품에 사물성이 생겨난 효과와 영향으로 지문은 마무리되었다. 예술이 감상자와 분리되거나 수동적인 관조의 대상이 아니라, 감상자에게 '적극적'인 태도를 부여했다는 거다.

[32~37] 사회 : 취득 시효 제도의 경제적·법적 논리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경제학 - 후생 경제학

후생, 사회 후생, 근로 유인

사회 - 법학 - 민법

소유권, 취득 시효 제도, 재산권, 등기, 무단 점유, 등기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항변권, 배임 행위, 법률 행위

* 지문 분석

문단1 : 취득 시효 제도

1) 우리 민법은 어떤 땅[→ 부동산]을 오랫동안 점유[→ 사실상의 지배]하여 사용해 온 사람이 [소유자가 아님에도]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취득 시효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주의하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는 **소유권자가 아니었을**을 전제로 한다. 한마디로 ‘취득 시효 제도’는 어떤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아도 오래 점유하기만 하면 소유하게 해 주는 제도인 게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부동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니.....

* 개념 확장

시효 제도

시효(時效)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해당하는가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정당한 권리관계로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시효 제도에는 ‘소멸 시효’와 ‘취득 시효’가 있다. 이는 안정적으로 지속되어 온 사실 관계를 원칙만을 근거로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이유만으로 정당한 권리관계가 쉽게 소멸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매우 부당하기 때문에 시효 제도의 요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시효: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 → **정당한 권리관계 인정**

-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 = 소멸 시효
- 권리를 행사함 = 취득 시효
 - 부동산
 - 점유 취득 시효
 - 등기부 취득 시효
 - 동산

소멸 시효

‘소멸 시효’란 정당한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될 때]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소멸 시효에 의해 어떤 권리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 1) 소멸 시효에 걸리는 권리 : 모든 권리가 소멸 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오직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지상권, 전세권 등]만이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된다.
- 2)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충분히 계속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 보통의 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은 10년이다. 따라서 채권의 권리는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면 소멸하여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예) A가 B에게 돈을 빌렸다면 B는 A에 대하여 금전 채권의 채권자가 된다. B가 돈을 갚기로 한 시점으로부터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전 채권은 **소멸**[→ 소멸 시효의 완성]한다.

소멸 시효에서는 어느 시점부터 ‘권리 불행사의 상태’로 간주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통설[→ 어떤 사안에 대한 지배적 견해]에 따르면 권리 불행사의 상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점으로 시작된다. 한마디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의 장애가 없음에도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부터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시작된다.

2) 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원소유자가 있음에도 몇몇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현 상태**[→ 점유 상태]를 인정하여 **사회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맥락 짚기] 취득 시효를 완성시키는 ‘몇몇 조건’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 ‘취득 시효 제도’는 **사회 질서 안정**을 위한 제도란다. 원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고 대신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사회 질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니..... 일단 받아들이고 넘어가자. 영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다음 **[참조]**를 활용하자.

[참조] ‘취득 시효 제도’는 어떤 사실 상태가 충분히 오랫동안 계속되었을 때,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해당하는가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정당한 권리관계로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 어떤 부동산을 점유자 A가 실제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면, 다른 사람들도 점유자 A가 정당한 소유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원소유자 B가 정당한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A를 제재한다면 이는 A만이 아니라 A의 권리를 믿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취득 시효 제도는 안정적으로 지속되어 온 사실 관계를 존중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도입됐다.

3) 물론 땅을 점유해 왔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이 상식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나, ...

⇒ 2)에서 소개된 취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소유자 입장에서는 더욱 납득하기 힘들 게다. 어쨌든 내 부동산인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빼앗겨야 한다니.....

4) **사회 후생**의 증대를 위해 재산권을 명확히 확립하여 재산권이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는 **경제적 논리**도 이 제도의 취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맥락 짚기] 앞으로는 ‘경제적 논리’로 초점이 옮겨질 게다.

⇒ ‘사회 질서의 안정’은 취득 시효 제도의 당위성에 대한 **법적 논리**였다면, ‘재산권의 효율적 행사’는 취득 시효 제도의 당위성에 대한 **경제적 논리**겠다. 이는 ‘사회 후생의 증대’와 관련이 있다는데..... 좀 더 읽어 보자.

문단2 : 취득 시효 제도의 경제적 논리

1) **재산권**은 특정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까지 포괄한다.

⇒ 맞다. 어떤 땅을 처분하여 차익을 내는 권리뿐 아니라 그 땅을 임대하여 수익을 내는 권리 역시 재산권에 포함될 게다.

2) 경제 주체들이 자산을 사용하여 단일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가상의 사회가 있으며, 그 주체들은 재화로부터 얻는 **효용**에서 근로로 인한 **비효용**을 뺀 **후생**이 극대화되는 지점만큼 근로 시간을 투여한다고 가정하자.

[맥락 짚기] ‘경제적 논리’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실험의 시작이다.

⇒ 쉽게 말해서, 경제 주체들은 각자의 후생이 극대화되는 지점만큼 기꺼이 노동하려 한다는 얘기다. 정리하면.....

후생 = 효용 - 비효용

3) 이 사회에서 경제 주체의 하루당 생산 상황이 <표>와 같을 때, 각 주체들은 근로 시간을 하루 2시간씩 투여하여 5의 후생을 얻을 것이다.

근로 시간	생산물의 양	생산물에서 얻는 효용	근로로 인한 비효용
1	1	10	6
2	2	18	13
3	3	24	22

<표>

⇒ 하루 2시간씩을 투여했을 때 각자의 후생이 극대화된다는 얘기다. 근로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후생이 끝없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게다. 다음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고 넘어가자.

근로 시간	생산물의 양	생산물에서 얻는 효용	근로로 인한 비효용	후생
1	1	10	6	4
2	2	18	13	5
3	3	24	22	2

[참고] 근로 시간이 2에서 3으로 늘어났을 때 ‘근로로 인한 비효용’이 대폭 증가하여 오히려 후생이 감소하는 것은 ‘비효율’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근로 시간을 1에서 2로 늘렸을 때] 근로자의 숙련도 등이 높아짐에 따라 효용이 증가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 근로 시간을 2에서 3으로 늘리면] 더 이상 증가할 효용이 없기에 오히려 비효용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비효율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 4) 이때 **사회 후생**은 개인별 후생을 모두 더한 값이다.
⇒ 3)에서 경제 주체가 얻는 개인별 후생이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사회 후생은 당연히 개인별 후생이 극대화될 때만 극대화될 수 있을 게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text{사회 후생} = \sum (\text{개인별 후생})$$

$$\therefore \text{개인별 후생} \uparrow \Rightarrow \text{사회 후생} \uparrow$$

- 5) 그런데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생산물의 절반을 약탈당하는 상황이라면, ...

[Rew] 문단1-4)를 떠올려야겠다. 어떤 자산에 대한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황’은 경제 주체가 그 자산을 사용하여 얻는 ‘실질 생산물’의 양은 절반이 되는 상황과 같다는 얘기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통해 시효 취득 제도의 당위성에 대한 ‘경제적 논리’를 설명하려는 것일 게다.

- 6) 각 경제 주체가 생산물에서 얻는 효용은 <표>에 제시된 효용의 절반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1시간 일했을 때 얻는 생산물은 0.5, 생산물에서 얻는 효용은 5이며 후생은 -1이다.
⇒ 3)의 표를 다시 끌어와야겠다. 이때 ‘근로로 인한 비효용’은 달라질 이유가 없다. 여전히 투입되는 근로 시간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때 개인별 후생은 얼마의 근로 시간을 투자하든 0보다 작아진다.

근로 시간	실질 생산물의 양	실질 생산물에서 얻는 효용	근로로 인한 비효용	후생
1	0.5	5	6	-1
2	1	9	13	-4
3	1.5	12	22	-10

- 7) 결과적으로 각 주체는 1시간도 일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별 후생을 모두 더한] 사회 후생 역시 0이 된다.

⇒ 따라서 그 어떤 경제 주체도 근로 시간을 투여하지 않을 테고 당연히 사회 후생도 0이 된다. 즉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게다.

- 8)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어 재산권 행사가 불확실해지면 [→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 후생을 높이는 **‘근로 유인’**[→ 가까이 근로 시간을 투입하고자 하는 동기]이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맥락 짚기] 제도의 당위성에 대한 ‘경제적 논리’의 결론이다.

[Rew] 문단1-2)에서 언급된 ‘법적 논리’의 핵심이 사회 안정성도 모라면, ‘경제적 논리’의 핵심은 ‘재산권의 효율적 행사’를 통한 사회 후생의 극대화에 있는 게다. ‘개인별 후생’이 극대화될 때 ‘근로 유인’도 발생하고, ‘사회 후생’도 극대화되는 만큼 재산권을 명확히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설령 그 과정에서 어떤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말이다.

문단3 : 취득 시효 제도의 조건

- 1) 취득 시효 제도는 자산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재산권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경제적 논리에 덧붙여, ...

⇒ 문단2에 대한 요약이다. 딱히 새로운 내용은 없다.

- 2) 소유자가 사회 후생을 높일 수 있음에도 권리 행사를 태만히 한 것에 대해 제재하는 취지도 담고 있다.

⇒ 이걸 다소 새롭다. 애초에 ‘재산권의 불확실성’이 발생한 것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확실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취득 시효 제도’는 사후적으로 재산권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도 사전적으로 재산권의 불확실성을 예방하는 제도인 게다.

- 3) 다만 취득 시효가 인정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주목] 집중하자. 문단1-2)에서부터 의식했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취득 시효의 요건’에 대한 설명의 시작점이다.

- 4) 민법 제245조 제1항에는 ‘① 20년간 ② 소유의 의사로 ③ 평온, ④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⑤ 등기함으로써 그 [→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여, 취득 시효를 인정하면서 그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 정보의 밀도가 심상치 않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조건들은 일단 다음과 같다. 각각의 조건들에 대한 세부 내용들은 차차 확인해 나가야겠다.

점유 기간	①	20년
점유 방식	②	소유의 의사
	③	평온
	④	공연
취득 조건	⑤	등기

<취득 시효 제도의 조건>

- 5) 이에 따르면 점유 기간의 충족[→ ① 20년]은 물론, ②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점유가 무단 점유가 아니어야 한다. **무단 점유**란 타인 소유임을 알고도 적법한 법률 행위 없이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맥락 짚기] 이제 4)에서 정리한 ‘취득 시효의 조건’에 대한 상술이 이어질 게다.

⇒ ②에 대한 설명이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것은, ‘무단 점유’의 정의를 고려했을 때, 타인의 소유임을 미처 알지 못하고 점유하는 것을 가리키겠다.

- 6) 또한 강압이나 폭력을 쓰지 않는 ③ 평온한 점유여야 하며, ...

⇒ ③에 대한 설명이다. ‘평온한 점유’란 강압이나 폭력을 쓰지 않으면서 점유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 7) 몰래 하지 않는 ④ 공연한 점유여야 한다.

⇒ ④에 대한 설명이다. ‘공연한 점유’란 숨기지 않으면서 점유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 8) 이러한 조건[→ ①~④]이 모두 충족되어 취득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주목] 잠깐, 분명 민법 제245조 제1항에는 ‘⑤ 등기’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①~④까지만 충족해도 취득 시효는 완성된단다. 즉 ‘취득 시효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과 ‘취득 시효의 완성’은 별개였던 게다.

[Rew] 눈치가 빠른 학생이라면 왜 문단1-1)에서 ‘취득 시효 제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했는지 이해했을 게다.

- 9) ⑤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이 취득된다.

⇒ 이제 확실히 알겠다. 사실 ‘등기’는 ‘취득 시효의 완성’에 포함되는 과정이 아니었던 게다. 등기는 취득 시효가 완성되고 실제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였던 게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10) 등기란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 그렇다. 취득 시효를 완성시킨 점유자는 공적 장부에 자신의 소유권을 기록함으로써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문단4 : 민법 제187조의 문제

1) 그런데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 소유권 등을 포괄함]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실제 소유권은 등기에 의해 취득된다. 그런데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단다. 이 두 조항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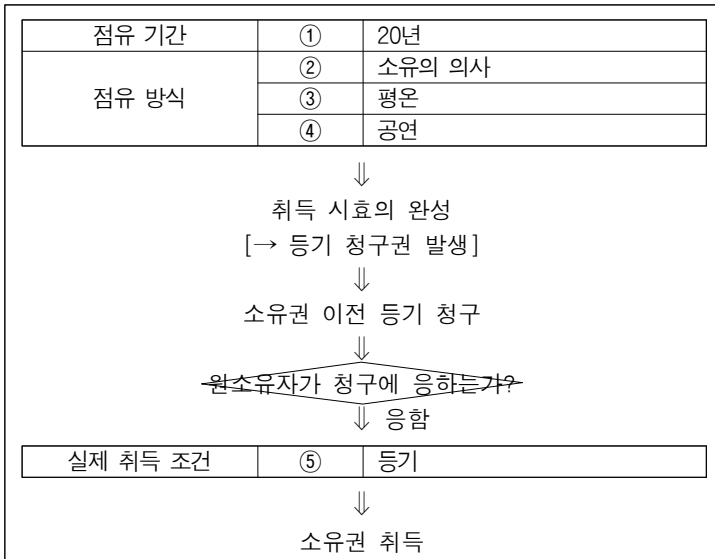
2) 이를 감안할 때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해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①~④가 충족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물권[→ 부동산의 소유권]이 아니라 채권[→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일종인 등기 청구권이라는 해석이 인정받고 있다.

⇒ 1)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취득 시효의 완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등기 청구권'이라면 1)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다. 해당 법률에 의해 '물권' 자체를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 '물권'은 특정 물건에 대한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대세적 효력'을 지닌다. 이와 달리 '채권'은 채권 관계에 있는 특정인에게만 유효한 '상대적 효력'을 지닌다. 즉 2)의 등기 청구권 역시 오직 원소유자에게만 유효하다.

3) 이에 따르면 취득 시효의 완성[→ 점유자의 등기 청구권 발생] 후 점유자의 등기 청구에 원소유자가 응할 경우에 한해 그 점유자인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됐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보자. 이제는 눈치챘겠지만 '취득 시효 제도'에 따라 취득 시효를 완성시키고 실제로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문단1-1)에서부터 부동산 마련의 기대를 가득 품고 여기까지 왔다면 상당히 유감이다.



[주목] 그렇다면 원소유자가 점유자의 등기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가 의문인데.....

문단5 : 원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권

1) 시효 취득자[→ 취득 시효를 완성시킨 점유자]가 등기를 하기 전까지 원소유자는 엄연한 법률상 소유자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시효 취득자가 점유하고 있는 그의 땅에 대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 시효 취득자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면, 이에 대항하여 원소유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다.

2) 이 경우 원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과 시효 취득자의 등기 청구권이 충돌하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등기 청구권]에 우선한다는 일반적인 법 이론에 따르면 시효 취득자는 점유해 왔던 부동산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즉 그러한 해석을 따를 때 민법 제245조 제1항은 사문화[→ 법령이나 규칙 따위가 실질적인 효력을 잃어버림]되고 마는 것이다.

⇒ 설명이 다소 복잡하다. 한마디로 '물권적 청구권'인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 대로라면 시효 취득자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는 얘기겠다.

원소유자		시효 취득자
<u>소유물 반환 청구권</u> [→ 물권적 청구권]	>	<u>등기 청구권</u> [→ 채권적 청구권]

* 개념 확장

채권적 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 점유권, 소유권 등]을 근거로 발생하는 청구권[→ 특정인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가리킨다. 따라서 오직 물권을 갖는 자만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채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근거로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매매를 근거로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취득 시효의 완성을 근거로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모두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 측이 갖는다. 물권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띠는 물권적 청구권과 달리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의 성격만을 띠며,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또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근거로 하는 만큼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문단6 : 항변권

1) 이에 관해서는 청구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인 항변권에 의거하여 시효 취득자가 원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 대신 시효 취득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이길 수 있는 '항변권'을 갖는다. 덕분에 민법 제245조 제1항이 사문화되지 않아도 되겠다.

[주목] 여전히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저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항변권'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저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원소유자		시효 취득자
<u>소유물 반환 청구권</u> [→ 물권적 청구권]	>	<u>등기 청구권</u> [→ 채권적 청구권]
	<	항변권

2) 민법 제213조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규정하면서

⇒ 민법 제213조는 원소유자가 가지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근거가 된단다. 그와 동시에.....

3) 그 단서로서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

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물권적 청구권인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저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항변권의 근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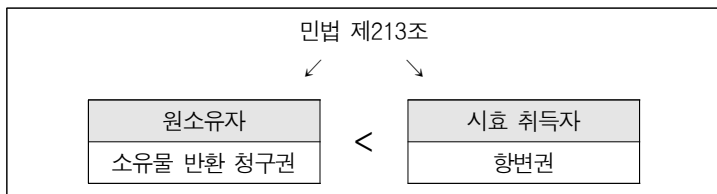
⇒ 시효 취득자가 가지는 ‘항변권’의 근거가 되기도 한단다.

- 4) [①~④가 충족됨으로써] 취득 시효가 완성되고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해당 점유는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아 항변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Rew] 3)에서 설명한 민법 제213조의 단서에 따르면 점유자는 ‘점유할 권리’를 가질 때 원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때 ‘점유할 권리’는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단다.

- 5) 결국 원소유자는 시효 취득자의 청구에 대해 응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설령 문단4-3)의 정리에서 원소유자가 청구에 응하는 대신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내세우더라도 별 소용은 없다. 시효 취득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으로써 ‘항변권’을 갖기 때문에 원소유자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권리 모두 같은 조항을 근거로 함에 주의해야겠다.



문단7 : 원소유자의 처분 행위

- 1) 만일 원소유자가 [시효 취득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청구 사실을 알고 나서 해당 부동산을 제3자[→ 원소유자도 시효 취득자도 아닌 자]에게 처분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배임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

⇒ 원소유자가 악의로 아예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이 역시 처벌받는다. 당연한 얘기다. 다만 이 처벌 자체가 자동적으로 원소유자로 하여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응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제3자에게 처분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문제가 될 게다.

[참조] 지문에 따르면 ‘배임 행위’는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이는 원소유자가 시효 취득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청구의 사실을 알고도 응하는 것이 문단6-5)에 따라 곧 ‘원소유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 2) 이때 제3자가 해당 사정을 알면서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 제3자가 악의로 해당 사안에 가담했다면]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적법하지 않은] 법률 행위로서 처분은 무효가 되고, 시효 취득자는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참고] 법학에서 말하는 ‘선의’와 ‘악의’는 일상에서의 용례와는 매우 다르다. ‘선의’란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고, ‘악의’란 반대로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가할 목적 없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해도 악의에 해당한다.

⇒ 제3자가 악의로 배임 행위에 가담했다면, 처분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시효 취득자가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만큼, ⑤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3) 다만 시효 취득자가 등기하기 전에

⇒ 만약에 시효 취득자가 등기를 했으면 이미 시효 취득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지만, 만약에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한 상황이면.....

- 4)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 그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시효 취득자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 선의의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원소유자의 처분은 유효하다는 얘기겠다. 이때는 이미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시효 취득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 5) 이에 대해 배임 행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알고도 제3자에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를 한 원소유자는 시효 취득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 따라서 시효 취득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더 이상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대신 그에 상응하는 손해 배상을 원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선의의 제3자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원소유자와 시효 취득자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소리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3자	부동산의 소유권
악의의 제3자	처분이 무효인 만큼, 등기를 통해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함
[등기를 완료한] 선의의 제3자	처분이 유효한 만큼,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함.
	원소유자는 시효 취득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짐

[참조] 이런 진행은 법학 지문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는 진행이다. 이번 기회에 익숙해지면 큰 도움이 될 게다. 원소유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이미 소유권을 넘겼다면, 시효 취득자의 등기 청구권은 실질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만큼 오직 원소유자에게만 유효하지, 선의의 제3자에게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효 취득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며, 그 대신 원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권의 이행 불능을 근거로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갖는다.

[43~45] 현대시 : (가) 김현승, 「눈물」

* 작품 평가

눈물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와 인식을 주목하자. 참고로, 시인은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긴 상태에서, 그 슬픔을 종교적 의미로 승화시키며 이 작품을 지었다고 한다.

* 작품 분석

1연 : 눈물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더러는

→ [내가 흘리는 눈물 중에서] 더러는

옥토(沃土)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 기름진 땅에 떨어져서 [작은 생명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의미 있는 것이었으면.....

- 1) 눈물을 머금은, 눈물을 흘리는 시적 화자를 상정해 두자.
- 2) 화자는 자신의 눈물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듯하다.
- 3) '작은 생명'이라는 표현에서, 창작의 배경[→ 시인의 아들의 죽음]을 떠올려 맥락을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2연 : 내 모든 것인 눈물

흙도 티도,

금 가지 않은

→ 아무런 손상이나 훼손이 없는, 가장 순수한 채로의

나의 전체(全體)는 오직 이뿐!

→ 나의 전체나 마찬가지로 것은 오직 이 눈물뿐!

⇒ 지극한 슬픔 속에 우러나는 눈물만큼 더 값진 것은 없다는 인식 이겠다.

3연~4연 : 내가 지닌 가장 값진 것인 눈물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 제,

→ [당신께서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더욱 값진 것을 바치라고 요구하실 때,

나의 가장 나아중 지니인 것도 오직 이뿐.

→ 내가 가장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있는 것도 오직 눈물뿐.

5연 : 당신의 섭리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 나무의 꽃이 [계절을 지나며] 시드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가을에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의 섭리]은

⇒ '시들을 보시고'와 '열매를 맺게 하신'에서 값진 결실의 바탕에 고귀한 희생이 놓여 있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6연 : 웃음 뒤에 눈물을 주신 당신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 [삶의 기쁨이나 보람을 통해] 나에게 웃음을 주신 후에 [삶의 시련이나 성찰을 통해] 새로이 나에게 눈물을 흘리도록 하시는구나.

⇒ 외재적 접근을 동원하면, '사랑스러운 아들을 주심으로써 나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웃음을 주시더니, 이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나에게 지극한 슬픔과 눈물을 주셨구나!' 정도로 읽을 수 있겠다. 화자의 태도는 절대자에 대해 원망하기보다는 슬픔 속에서 절대자가 부여한 삶의 의미를 성찰하려는 쪽이다.

주제 : 눈물을 통해 성찰하는 삶의 의미